

사단법인 AI휴먼소사이어티(AIHS) 정관

2024. 5. 17.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AI휴먼소사이어티"(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산학연정 전문가 등이 모여 국내외 AI 트렌드를 분석하고 국가적으로 AI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AI 현장 순회 월례포럼(월 1회), AI 정책포럼(연 2회 이상)
2. AI 교육(전문가 과정, 최고위과정, 단기 세미나, 학생 교육 등)
3. AI 인증 프로젝트
4. AI 관련 출판과 유튜브, 소통 플랫폼 구축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1.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된다. 정회원은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2. 정회원은 AI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산·학·연·정 전문가로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3. 특별회원은 AI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현직 언론인,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는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법인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해 그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 특별회원도 총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제한된다.

제7조(회원의 의무)

- ①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② 특별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대표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정회원의 잔여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상벌)

-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회장 3인 이내(대표회장 1인 포함)
3. 부회장 7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5. 이사 17인 이내(발기인 포함)

제11조(임원의 선임)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또한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 ② 대표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과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대표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나 궐위되었을 때는 다른 공동회장 중 연장자가 대표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나 궐위되었을 때는 기존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표회장이나 이사장이 궐위 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직무를 대행하는 대표회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지체 없이 대표회장과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6조(상임고문단과 위원단의 임면과 의무)

- ① 본회는 상임고문단(3인 이내), 자문위원단, 산학협력위원단, 대외협력위원단을 두고 이사회에서 임면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상임고문단과 위원단은 본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본 사단법인의 회원 수가 200인 초과시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 총회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대의원 정수는 본회의 상임고문단, 회장단, 부회장단, 총괄간사, 각 분과장을 포함해 회원 총수의 20%로 한다. 이사장이 회장단과 협의해 대의원 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다.
- ④ 사단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회장이 회장단과 협의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대표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단과 협의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대표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대표회장은 다음 제 1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실시간 화상회의 포함)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회장단과 협의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회장단과 협의해 소집한다.
- ③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온라인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장단과 협의해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4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회장단과 협의해 서면(실시간 화상회의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서면(실시간 화상회의 포함)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 정족수)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실시간 화상회의 포함)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2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회계의 공개)

- ①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사무국장과 상근직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 ① 회장단과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법인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4년 5월 17일